

정보 공개 서

보쌈

보쌈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40333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4-04-1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12.18.

홈페이지
www.barunshik.com
이메일
admin@barunshik.com



정보 공개 서

(주)바른식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 바른식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37, 301~302호 (중앙인더스피아5차, 상대원동)
대표전화: 02-585-2138
대표팩스: 02-585-2136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영업본부: 02-585-2139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바른식	반하는보쌈 & 밥상 외 1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37, 301~302호 (중앙인더스피아5차, 상대원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1.06.16.	2011.06.16	김천수	02-585-2138	02-585-2136
	법인등록번호	131111-0285211	사업자등록번호	129-86-6194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김천수 (주)바른식	반하는보쌈&밥 상 외 1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37, 301~302호 (중앙인더스피아5차, 상대원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천수	02-585-2138	02-585-2136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사 (임원)	김순금 (주)바른식	반하는보쌈&밥 상 외 1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37, 301~302호 (중앙인더스피아5차, 상대원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02-585-2138	02-585-2136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반하는보쌈 & 밥상] 이라 합니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반하는보쌈 & 밥상	
상 호	반하는보쌈 & 밥상 OO점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출원번호 : 41-2015-0035677 (등록 번호) : 41-035712
		서비스표 출원번호 : 41-2013-0003807 (등록 번호) : 41-0282172
		서비스표 출원번호 : 41-2013-000380 (등록번호) : 41-0282173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4,221,271	2,753,956	1,467,315	2,552,313	95,338	15,077
2023년	3,950,816	2,463,337	1,487,479	2,756,803	98,105	20,163
2024년	3,869,341	2,427,569	1,441,772	2,309,054	158,567	60,965

* 그 근거자료는 별첨 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의 매출액과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천수	대표이사	2011.06.16~현재	대표	회사 업무 총괄
	김순금	전무이사	2011.06.16~현재	대표	회사 업무 총괄
	김윤수	본부장	2015.04.01.~현재	본부장	가맹사업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최필선	이사	2011.06.11.~현재	이사	회계 · 자금
	박재효	본부장	2011.06.11.~현재	본부장	생산 · 물류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12월 31일	2	0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바른식	가맹사업 경영	2011.06. ~ 현재	바른식시골보쌈&감자용심이 (등록번호: 20120100188)
		가맹사업 경영	2014.02. ~ 현재	반하는보쌈&밥상 (등록번호: 20140333)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서비스표	2013.02.01. 출원 2014.03.05. 등록	출원번호 : 41-2013-0003808 등록번호 : 41-0282173-0000	김천수	2024년 03월 05일
	서비스표	2013.02.01. 출원 2014.03.05. 등록	출원번호 : 41-2013-0003807 등록번호 : 41-0282172-0000	김천수	2024년 03월 05일
	서비스표	2015.07.27. 출원 2016.04.25. 등록	출원번호 : 41-2015-0035677 등록번호 : 41-035712-0000	김천수	2026년 04월 25일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I. 가맹본부의 [반하는보쌈 & 밥상] 가맹사업 현황

1. [반하는보쌈 & 밥상] 을 시작한 날 : 2014년 4월 2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4년 4월 2일)

2. [반하는보쌈 & 밥상]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바른식	반하는보쌈	김천수	2014.04.02. ~ 2016.02.2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37, 301~302호 (중앙인더스피아 5차, 상대원동)
(주)바른식	반하는보쌈 &밥상	김천수	2016.03.01.~현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37, 301~302호 (중앙인더스피아 5차, 상대원동)

3. [반하는보쌈 & 밥상] 업종

영업표지	업종	
반하는보쌈 & 밥상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돼지고기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반하는보쌈 & 밥상]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4	4	-	2	2	-	1	1	-
서울	2	2	-	2	2	-	1	1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경기	2	2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반하는보쌈 & 밥상]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4	-	-	-	-	4
2023	4	-	-	2	-	2
2024	2	-	-	1	-	1

[반하는보쌈&밥상]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6. [반하는보쌈 & 밥상]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주)바른식	바른식 시골보쌈&감자 옹심이	20120100188	기타외식	4/0	4/0	3/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평균매출액 (단위: 천원)						비고
		연간 평균매출액		상한		하한		
		연간 평균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	-	-	-	-	-	-	-
서울	1	-	-	-	-	-	-	-
부산	0	-	-	-	-	-	-	-
대구	0	-	-	-	-	-	-	-
인천	0	-	-	-	-	-	-	-
광주	0	-	-	-	-	-	-	-
대전	0	-	-	-	-	-	-	-
울산	0	-	-	-	-	-	-	-
경기	0	-	-	-	-	-	-	-
강원	0	-	-	-	-	-	-	-
충북	0	-	-	-	-	-	-	-
충남	0	-	-	-	-	-	-	-
전북	0	-	-	-	-	-	-	-
전남	0	-	-	-	-	-	-	-
경북	0	-	-	-	-	-	-	-
경남	0	-	-	-	-	-	-	-
제주	0	-	-	-	-	-	-	-

당사의 가맹점은 1곳으로 연간평균매출액을 산정하기에 합리적이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8. [반하는보쌈&밥상]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반하는보쌈&밥상]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	1446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반하는보쌈&밥상]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가 2024년 광고 판촉에 지출한 내역은 없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2024.01~12	-	-	-	-
광고	-	2024.01~12	-	-	-	-
판촉	-	2024.01~12	-	-	-	-

11. 가맹금 예치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우리은행 문래동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20길(문래동3가, 메가벤처타워1층)	02-2635-099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계약체결 다음날 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서비스"를 클릭 한 후 (주)바른식을 찾아 금액을 입력 하면 됩니다.
-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 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가맹금을 예치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반하는보쌈&밥상]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6,500]				
초도가맹비	11,000	계약 체결과 동시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1. 영업 개시 이전까지 개업지원, 자료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공 시 해당 대가는 제외하고 반환 2. 영업 개시 이후 반환되지 않음(소멸)	※영업표지 사용 대가는 계약의 만료시까지 일로 계산하여 경과한 기간의 해당분의 금액은 소멸, 잔여기간의 해당분의 금액은 반환
개점전 교육비	5,500	계약 체결과 동시	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는 가맹점 사업자가 사업자등록후 최초 영업개시 해당 월말에 납부합니다.

▶ 개점전 교육 기간 중 가맹점 직원들의 인건비는 가맹점주 부담입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5,000	계약 체결과 동시	가맹본부에 채무존재 시 상계후 반환	
계약이행보증금	5,000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단위: 천원)
총계	21,500
초도가맹비	11,000
개점전 교육비	5,500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5,0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3]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132㎡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26,300	3,158			
인테리어 내부	협력업체	70,000	1,750	착공시 : 공사금액의 40% 공사완료중간: 공사금액의 40% 공사완료시 : 공사금액의 20%	공사전 계약취소	출급배기 포함
주방기기	협력업체	24,000	600	공사완료시	설치전 계약취소	
집기자재	가맹본부	12,000	300	자재수령 후	자재	의탁자,홀,주방,PO

					미공급시	S등
간판	협력업체	17,000	425	공사완료시	공사전 계약취소	LED간판,유도간판, 내부실사,표시물
초도 상품비용	가맹본부	3,300	83	자재수령 후	자재 미공급시	재고 준비량에 따라 변동 가능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전면통유리공사, 전기증설 비용, 에어컨, 외부공사, 철거공사, 소방방염공사, 화장실 공사, 덕트외부 삽입공사, 가스공사, 후드제작 등 기타 지원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및 사항은 별도로 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건물 구조 및 가맹점사업자의 선택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합니다. 별도 공사에 대한 예상비용은 별첨의 별도 공사비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대가로 33㎡ 기준으로 500천원**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세부 내용은 별첨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점포개발팀 (전화:02-585-2138)	담당자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조사 등 시장분석→ 최적의 입지 도출 → 당사 및 가맹희망자가 동의 시 확정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며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 (주)바른식은 점포선정에 대한 상권분석 및 입지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가맹점 입지를 선정하고 판단하는 최종 주체 및 책임자는 가맹점사업자(가맹점 희망자)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원활한 점포운영이 가능한 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당사가 규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종업원	일반음식점에 근무가 가능한 자	가맹점주가 별도 정함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반하는보쌈&밥상]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 상세 내역은 별첨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p>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p>
---	--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POS ASP	(협력업체)	30	매월10일	미반환	사용료	매월납부(ASP사용료)
로열티	(주)바른식	매월 카드매출+ 현금매출에 1%	매월15일	미반환	서비스표 사용료	
광고분담금	(주)바른식	가맹점사업 자측의 분담금 X 월 평균 "을" 로열티 / 가맹점사업자 월평균 로열티 총합계	매월15일	광고 진행되지 않을 경우	광고 진행 후 광고료	가맹점 사업자측의 분담금 X 월 평균 "을" 로열티 / 가맹점사업자 월평균 로열티 총합계
시설 및 집기자재 노후화시 가맹본부와 협의 후 진행						
리모델링(내부)	협력업체	60,000 (3.3㎡당 1,750)	착공시: 40% 공사중간완료시: 40% 공사완료시 20%			
리모델링(간판)	협력업체	10,000	공사완료시			LED간판(후광조명방식1개면기준,가로 최대10m)
주방기기	협력업체	수시	공사완료시			노후설비기기 교체비용
지연이자	(주)바른식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 개선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4페이지 참조

- 당사의 광고분담금 등은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사전통지를 하고 실비 수준에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다른 간판변경비용은 가맹점의 규모, 간판의 재질, 변경사유, 당사자의 귀책사유, 계약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당사는 귀하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기준: 2024년)	내 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당사의 경우 경영상 이유로 차액가맹금 파악이 어려우며 소수의 가맹점을 기준으로 차액가맹금을 기재 할 경우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생략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영업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가맹점 관리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 상태를 조사 (위생,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자재관리 등)	수시	문의 : 영업본부 02-585-2138

-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당사는 가맹점 감독 시 위생,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자재관리 등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과 같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

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반하는보쌈&밥상]**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0]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가맹점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반하는보쌈&밥상]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귀하가 [반하는 보쌈 & 밥상]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 하는 부동산·용역·설비·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반하는보쌈&밥상]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경제적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2) 당사가 [반하는보쌈&밥상]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반하는보쌈(2인,3인,4인)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 할 수 없음 (가맹본사에서 매출향상 등 타당한 이유를 위하여 사전 협조 후 메뉴를 추가 또는 철거 할수 있으며 가맹 사업자는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1회 위반	전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품목의 경우에도 동일 규정 문의 : 02-585-2138
반반보쌈(2인,3인,4인)			
모듬보쌈		2회 위반	
찢어먹는족발(대,중)			
보족세트		3회 이상 위반	
바비큐 훈제오리보쌈			
쭈꾸미철판			
꼬막무침			
문어숙회			
메밀전병			
해물파전			
감자전			
시골빈대떡			
쟁반막국수			

생굴			
감자떡			
감자옹심이			
돌솥밥보쌈정식			
보쌈정식			
코다리냉면(보통,곱배기)			
물냉면(보통,곱배기)			
비빔냉면(보통,곱배기)			
돌솥전복밥			
돌솥곤드레비빔밥			
꼬막비빔밥			
쭈꾸미비빔밥			
돌솥밥순두부			
순두부정식			
시골한상			
모듬한상			
밥한상			
굴비정찬			
보쌈정찬			
굴비보쌈세트			
돌솥밥 추가			
공기밥 추가			
고기 추가			
고기 1/2추가			
오리 추가			
김치추가(대,중,소)			
쟁반막국수 1/2추가			
고기 만두			
새우만두			
납작군만두			
치즈돈가스			
우거지소고기국밥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

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1회 위반 : 구두경고 2회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기타 법률사항
다른 가맹점사업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반하는보쌈(2인,3인,4인)	36,000 / 45,000 / 54,000	개별공문발송 및 POS공지	2018년 12월 31일 기준
반반보쌈(2인,3인,4인)	39,000 / 45,000 / 54,000		
모듬보쌈	63,000		
찢어먹는족발(대,중)	38,000 / 36,000		
보족세트	49,000		
바비큐 훈제오리보쌈	37,000		
쭈꾸미철판	27,000		
꼬막무침	24,000		
문어숙회	30,000		
메밀전병	12,000		
해물파전	13,000		
감자전	12,000		
시골빈대떡	12,000		
쟁반막국수	13,000		
생굴	13,000		

감자떡	6,000		
감자옹심이	9,000		
돌솥밥보쌈정식	12,000		
보쌈정식	9,000		
코다리냉면(보통,곱배기)	9,000 / 10,000		
물냉면(보통,곱배기)	8,000 / 9,000		
비빔냉면(보통,곱배기)	8,000 / 9,000		
돌솥전복밥	13,000		
돌솥곤드레비빔밥	9,000		
꼬막비빔밥	11,000		
쭈꾸미비빔밥	9,000		
돌솥밥순두부	9,000		
순두부정식	8,000		
시골한상	95,000		
모듬한상	97,000		
밥한상(공기/돌솥)	10,000 / 12,000		
굴비정찬	20,000		
보쌈정찬	34,000		
굴비보쌈세트	34,000		
돌솥밥 추가	4,000		
공기밥 추가	1,000		
고기 추가	25,000		
고기 1/2추가	15,000		
오리 추가	16,000		
김치추가(대,중,소)	12,000 / 8,000 / 5,000		
쟁반막국수 1/2추가	8,000		
고기 만두	3,000		
새우만두	4,000		
납작군만두	3,000		
치즈돈가스	8,000		
우거지소고기국밥	8,000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당사에서 권장하는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보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소	반하는보쌈&밥상 · 시골보쌈&감자옹심이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별지가 없을 경우 점포소재지로부터 반경 1000M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 단, 상기 영업지역 보호제도는 가맹본부가 통신판매(온라인, 홈쇼핑 등), 유통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 ※ 단, 귀하가 체결하려는 당해 브랜드에 한하며, (주)바른식에서 가맹사업을 전개 중인 타 브랜드는 상기 영업지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반하는보쌈&밥상]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 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구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넷째, 배달 영업지역 및 배달 영업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은 계약서상 부여된 영업지역 및 영업권과 동일합니다. 다만 인근 [반하는보쌈&밥상] 매장이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한하여 다른 배달매장과 공동으로 인근 매장의 영업지역에서 배달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및 인근매장과 합의 후 가능)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반하는보쌈 & 밥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홈쇼핑	공영홈쇼핑	www.gongyoungshop.kr	보족세트	완제품 판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당사는 영업지역 관련 영업방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 [반하는보쌈&밥상]의 최초의 계약기간은 [3]년이며, 이후 재계약(갱신)의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이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D-180 ~ D-90

예→④, 아니오→③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물품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12조 6항 1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12조 6항 2
-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갑"의 영업방침을 거부하는 경우	12조 6항 3
- 가맹점포의 시설이 3년이상 경과되어 판매목적 내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노후내지 진부한 시설을 개보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보수 하지 아니한 경우	12조 6항 4
- 판매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갑"이 정한 기준(메뉴얼)에 따라 "을"이 제조 또는 서비스를 하지 아니하여 "갑"이 3회 이상 시정조치 또는 경고한 경우	12조 6항 5
- "을"이 Q,S,C 점검사항 등을 위반하여 "갑"이 3회이상 지적한 경우	12조 6항 6
- 가맹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POS의 구입 및 사용을 거부한 경우	12조 6항 7
- 그밖에 [반하는보쌈]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갑"의 영업방침 등)을 "을"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12조 6항 8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

- 영업 방침을 위반한 경우	26조 1-1항
- 초도 가맹금, 계약 이행 보증금, 물품대금, 시설비, 로열티, 광고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6조 1-2항
- 교육 관련 교육을 불참 하거나, 수료하지 아니한 경우	26조 1-3항
- Q,S,C와 관련하여 시정사항을 시정 조치 하지 않을 경우	26조 4 항
-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협조나 시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판매 촉진활동과 관련사항 위반, 가맹점포 운영과 관련한 POS정보 및 허위, 삭제, 한 경우	26조 1-5~7항
- 허위 사실 유포 및 부도덕 행위 ,다른 가맹점 선동, 등으로 신용 과 신뢰를 훼손한 경우	26조 1-8~1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7조 1-1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27조 1-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7조 1-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27조 1-4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7조 1-6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27조 1-7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27조 1-8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27조 1-9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27조 1-10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27조 1-10항
-	-

○ 귀하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90일전에 당사에 계약해지의 내용을 통보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당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합의를 거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통지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서정계약서에 정한 말부터 효력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본부와의 가맹 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영업본부 02-585-2138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 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 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의무사항
상속	상속사유발생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상속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승인요청 및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가맹본부의 계약 체결(7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기초과정 수수료	교육수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사전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본부에 사전승인 요청 후 가맹본부의 승인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가맹본부와 협의한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반하는보쌈&밥상]**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영업본부 (02-585-2138)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반하는보쌈&밥상]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30~22:00 (10시간30분)	3일 이상 가맹본부의 허락 없는 무단방치 금지	가맹본부와 협의 하에 변동가능 문의: 영업부 (02-585-2138)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감독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자체식재료 관리 및 품질이 본부 매뉴얼과 일치하는지 여부	담당자 현장 방문 → 점검사항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계약 기간 내 수시	당사 가맹사업운영팀	별첨 참조
고객 응대 및 서비스	"	"	"	"
광고 및 마케팅 본사 주관시 실시여부	"	"	"	"
가맹점 내·외부 청결관리	"	"	"	"
적정인원 구인 보충지도	"	"	"	"
필수 가입 보험서류 점검	"	"	"	"
가맹점 배달 상권 준수 여부	"	"	"	"
가맹본부 중앙 공급품 적정 사용여부	"	"	"	"
매출 장부 열람	"	"	"	"
식품위생감시단 점검	"	"	"	"
가맹점순회 점검표	"	"	"	"
가맹본부 담당직원 주기적으로 전체적인 관리 감독	"	"	"	"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바른식과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반하는보쌈&밥상] 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브랜드 광고	광고비의 50%	가맹점 사업자측의 분담금 X 월 평균 "을" 로열티 / 가맹점사업자 월평균 로열티 총합계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사업자 찬반 통지 -> 찬성 과반수 이상의 경우 실시 -> 비용분담 안내
	상품광고, 브랜드 광고+가맹점 모집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판촉행사, 각종 프로모션 등	공동 판촉활동	기획비용	제작비용 및 할인비용	판촉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사업자 찬반 통지 -> 찬성 70% 이상의 경우 실시 -> 비용분담 안내 (단, 70% 이상 미동의시 동의한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 실시 가능)
	개별 판촉활동	-	관련 제작실비 전액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부담액 부분을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귀하는 광고 디자인(전단지, 책자, 자석전단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단독으로 판촉활동을 할 경우 판촉활동의 자료, 문구,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당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득 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전단, 리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반하는보쌈&밥상]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판촉물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93일 내외	[10p~11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2~3일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및 점포계약	30일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45일~60일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맹금 예치	- 지정은행에 가맹금 예치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공사계약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내장, 주방시설, 간판 등) - 공사 마감		
개점 준비	- 개점 준비 및 점검		
교육 실시	- 점포 운영 교육 실시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규모에 따라 소요비용의 금액과 지불하는 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사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판촉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적인 홍보물 등의 디자인, 시안 등의 제작 비용 등은 "갑" 이 부담함을 원칙	판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 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할인비용이나 임의로 직접 제공하는 경품 . 기념품 . 팸플렛 . 전단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을" 이 부담	계약기간중	별도협의	

3. 경영활동 지원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영업본부 (02-585-2138)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영업본부 (02-585-2138)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반하는보쌈&밥상]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해당없음	-	-	-	-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반하는보쌈&밥상] 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경영주 입문 교육	1일차	본부 및 물류, 소개 및 교육		실습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전 교육 과정 점주 참석 必
	2일차	점포운영 관련 및 영업 방침 설명				
현장 교육	15일~4 0일	현장 교육을 통한 매뉴얼 서비스 교육 및 점포 운영을 위한 실습 교육				개인차에 따라 교육기간 다름
개점 후 교육	상시	운영 지도	추가 신입 직원 교육	실습/강의	당사가 정한 기일(별도공지)	필수 (수시)
			점포 운영상 재교육 및 새로운 교육 이 필요 할 시 현장 및 본사방문 교육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반하는보쌈&밥상]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1일차	6H	최초 가맹금에 포함	교육 직원 인건비는 점주 부담
	2일차	6H		
	15일~40일	매일 8H 이상		
개점 후 교육	상시	8H 이하	해당 없음	상황에 따라 교육시간 변동

3. 교육 · 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와 직원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당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교육 불 이수 시 제재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 운영자는 기초교육과정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하며, 수료하지 않은 자는 가맹점의 운영, 제품 조리, 배달 등 가맹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제13조 1항
교육과정을 사전통보하고 통보된 내용에 따라 교육일정을 진행하며, "을"은 "갑"과 사전협의 하여 교육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만약 "을"이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에 "갑"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3조 2항
기초교육과정 미수료자("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자 등)가 가맹점을 운영하거나 제품을 조리한 경우	제27조 8항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갑"의 기초과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만약 기초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점 운영, 제품의 조리 등을 할 수 없다.	제31조 4항

-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23조에 따라 30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4]조에 따라 []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점을 부여 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귀하가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거나 귀하나 귀하가 채용한 직원의 교육에 대한 이해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개점을 연기 또는 보류할 수 있으며, 상품공급의 중단 및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불참하는 경우, 귀하의 가맹점 매출액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갱신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2-585-2138)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http://www.barunshik.com>]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자문 확인서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체결 14일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 목록**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____년 ____월 ____일 가맹희망자 _____(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자문

※ 자문을 받은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 7일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본인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가맹거래사인 (_____)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은 날: ____년 ____월 ____일 가맹희망자 _____(인 또는 서명)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계약체결 1일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여야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가맹계약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은 날: ____년 ____월 ____일 가맹희망자 _____(인 또는 서명)

비밀유지 약속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공개서와 관련하여 귀사의 영업비밀 및 사업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가맹희망자 _____(인 또는 서명)

■ 가맹희망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폰번호	
주소			
가맹희망지역			

별첨1. 초기 가맹금외에 영업개시를 위한 비용

(단위 : 천원/VAT포함/영업개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2. 교육현황 및 근무기준

1. [반하는보쌈&밥상] 교육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반하는보쌈&밥상] 면적별 교육입소 및 권장근무 인원수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3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공급방법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4.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가맹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기 위한 공급품목

가맹점사업자가 당해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인테리어, 설비, 원부재료, 홀/주방 주요용품과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하는보쌈&밥상] 원부재료 공급품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반하는보쌈&밥상] 인테리어홀/주방 주요용품 공급품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5.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및 소요기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6. 교육훈련,프로그램

(주)바른식[반하는보쌈&밥상]의 구체적인 입문 교육에 대한 세부 운영 스케줄입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7. 원부자재 및 기타(상품/로고품) 품목 공급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9 추가공사 비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10 점포 체크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재무현황 전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